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2가단1494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14 지분, D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22. 5.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D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1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D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2. 5. 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D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7 지분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제1회사’라 한다)은 2015. 7. 30. D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19. 7. 30., 이율 연 34.9%, 지연손해금율 연 34.9%로 하여 대여하였다. 소외 제1회사는 2015. 12. 1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2. 29. D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차전52986호로 D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양수받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2. 29.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7,777,279원 및 그중 2,957,914원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1. 4. 1. 확정되었다. 2022. 11. 3. 현재 위 양수금은 원금 2,957,914원, 양수후 이자 6,759,540원을 합한 9,717,454원이다. 다. F 주식회사(이하 ‘소외 제2회사’라 한다)는 2014. 12. 9. D에게 7,000,000원을 변제기 2019.

12. 9., 이율 연 34.894%, 지연손해금율 연 34.894%로 하여 대여하였다. 소외 제2회사는 2015. 11. 10. G 주식회사에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1. 11. D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G 주식회사는 2018. 11. 9.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11. 29. D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차전556호로 D을 상대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양수받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3. 30.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8,982,933원 및 그중 6,974,554원에 대하여 2021.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1. 5. 25. 확정되었다. 2022. 11. 3. 현재 위 양수금은 원금 6,974,554원, 양수전 이자 6,181,503원, 양수후 이자 9,880,353원을 합한 23,036,410원이다.

마. 주식회사 H(이하 ‘소외 제3회사’라 한다)는 2015. 7. 2. D에게 4,000,000원을 변제기 대출일로부터 60개월, 이율 연 34.9%, 지연손해금율 연 34.9%로 하여 대여하였다. 소외 제3회사는 2016. 1. 28.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2. 4. D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차전34430호로 D을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받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6. 23.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9,643,013원 및 그중 3,996,031원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7. 11. 확정되었다. 2022. 11. 3. 현재 위 양수금은 원금 3,996,031원, 양수후 이자 9,133,811원을 합한 13,129,842원이다.

사.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2. 3. 13. 사망하였다.

아.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C과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자. 망인은, 1985. 4.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1999. 2.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1997. 4. 1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1986. 9. 27.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고, 제1 내지 4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 전부이다.

차. 망인의 사후 2022. 5. 3. 피고들과 D은, 피고 B이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제1, 2, 4부동산과 제3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22. 5. 17. 접수 제39624호로 2022. 3.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제3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22. 5. 17. 접수 제39625호로 2022. 3.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었던 제1 내지 4부동산들 중 2/7 지분 외 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 등기정보센터,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채무자 D이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거나,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채무자 D 소유 지분 부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D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또는 성립범위를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 D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제1 내지 4부동산이 그 명義와 달리 실질적으로 피고 B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피고들이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나아가 피고들은 채무자 D의 채무초과 사실 등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D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D은 피상속인인 망인의 사망으로 법률(민법 제1005조, 제187조)에 의하여 제1 내지 4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D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다. 따라서 D과 피고 B 사이에, 제1, 2, 4부동산 중 각 2/7 지분 및 제3부동산 중 1/14 지분1), D과 피고 C 사이에 제3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22. 5. 3.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해 D에게, 피고 B은 제1, 2, 4부동산 중 각 2/7 지분 및 제3부동산 중 1/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제3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방해미

부동산 목록

1. 세종특별자치시 대 274㎡
2.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세멘벽돌구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100㎡
부속건물 세멘벽돌구조 스라브지붕 단층 일반창고및보일러실 10.5㎡
3. 세종특별자치시 답 8517.7㎡
4. 세종특별자치시 전 367㎡ 끝.

1) = 피고 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제3부동산의 지분 1/2 - 피고 B의 상속지분 3/7